

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(定款) 변경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5년 9월 8일
제출자: (재)세종문화회관 사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(2024. 5. 20.)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정관 현행화 필요

- 노동자 수 1,000명 미만 기관에 속하므로 노동이사 정원 축소 필요

※ 《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 주요 내용 》

기존	개정(2024.5.20.)
제4조(대상기관)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	제4조(대상기관) — 300명 이상 —
제5조(임명) (생략)	제5조(임명) (생략)
제6조(자격) (생략)	제6조(자격) (생략)
제7조(정수)	제7조(정수)
1.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2명	1. 노동자 수가 1,000명 이상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2명
2.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1명	2. 노동자 수가 1,000명 미만인 공사 등: 각각 노동이사 1명

나. 市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으나 市 당연직 감사의 임기에 관한 조항 부재

2. 주요내용

가. 세종문화회관 이사회의 노동이사를 2인에서 1인으로 변경

나. 市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에 市 당연직 감사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차기 이사회 의결 (2025. 9. 19.(금) 예정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. 이사장 1인 2. 상임이사(이하“사장”이라 한다) 1인 3. 이사15인 이내(이사장, 사장 및 <u>노동이사 2인</u> 을 포함한다)(개정 2017.1.17., 2020.1.21., 2020.9.24) 4. 감사 2인	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노동이사 1인</u> -----. 4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③ <u>당연직 이사의 임기</u> 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	제10조(임원의 임기) ③ <u>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</u>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	부 칙 (2025. 9. 00.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